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94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의자 : 김홍걸 · 김경만 · 김경협
김영호 · 노웅래 · 민형배
박상혁 · 박성준 · 송재호
양경숙 · 이규민 · 전용기
조승래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남북 협력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3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 등에”를 “경제, 통계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u>경제</u>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경제</u>, <u>통계</u> 등에----- -----.</p>